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칠곡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7. 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칠곡군 ▽▽▽▽과에서는 “☆☆☆☆☆ ~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7. 5. 11. ‘□□□□(주) ∫ ∫ ∫’과 계약하고 2019. 5. 16. 준공 예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 ~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00	00 00	도로 L=1.6Km, B=25.0m	0,000	2017. 5.11.	2017.5.17. ~ 2019.5.16.	□□□□(주) ∫ ∫ ∫	진도 2%

본 공사의 흙운반은 무대운반 11,478m³와 유용운반 19,593m³(도차 2,824, 덤프 16,769)이고, 나머지 불필요한 토량 78,690m³는 사토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적재(로우더 1.72m³)와 운반(불도우저 32Ton 및 덤프트럭 15~24Ton)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 흙깎기(리핑암 및 발파암)의 단가산출서 내용을 살펴보면 리핑암 깎기의 경우는 불도우저(32Ton)와 리퍼(3본)를 이용하여 리핑암 깎기 후 불도우저(32Ton)로 집토하도록 산출되어 있고, 발파암 깎기의 경우에는 대형브레이카와 굴삭기(1.0m³)로 깎기 후 굴삭기(1.0m³)를 이용하여 발파암 들어내기로 단가가 산출되어 있다.

따라서, 흙깎기 후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및 발파암은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현장내 유용 및 사토운반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데도, 흙깎기 공종에 불필요하게 흙운반의 적재 공종과 중복되는 집토 및 들어내기 공종을 별도 반영함으로써 공사비를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철곡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ㄷㄷ~ㄷㄷ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ㄱ ㄱ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칠곡군 ㄷㄷ과에서는 “ㄷㄷ ~ ㄷㄷ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5. 12. 7. ‘(주)▼▼ § § §’과 계약하고 2018. 8. 29. 준공 예정으로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ㄷㄷ ~ ㄷㄷ간 도로확포장공사	00	00	도로 L=2.18Km, B=6.8~7.3m	0,000	2015. 12.7.	2015.12.14. ~ 2018.8.29.	(주)▼▼ § § §	진도 90%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은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 주행을 확보하는 시설로 신설도로의 기하구조가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는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에는 설치를 지양하며, 기존도로 구간 중 평면선형이나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갑작스런 감속이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도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설치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대에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관급자재대)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철곡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 ◎ ◎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위탁할 수 있고, 측량·설계·공사감리·안전점검 등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칠곡군 ㄷㄷ과에서는 “☆☆☆ ☆☆☆☆☆☆ 조성사업”을 ◇◇◇◇◇◇◇ ◇◇◇◇◇◇에게 위·수탁하여 아래 [표] 와 같이 2014. 6. 24. ‘↑↑건설(주) ±±±’

과 계약 하고 2018. 12. 31.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조성사업	00	00	생태공원 1식	0,000	2015. 10.2.	2015.10.6. ~ 2018.12.31.	♂♂건설(주) ± ± ±	진도 35%

1. 가설웬스 관련

본 공사의 가설사무실 부지경계에 설치계획인 가설웬스는 당초 설계에는 없었으나, 설계변경(2017.2.23.)시 신규로 가설웬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2017.9.6.) 결과 설계변경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가설웬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현지여건상 소음·진동·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은 위치로 별도의 가설웬스가 불필요함에도 설계변경시 환경 관련 검토·협의 등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2. 전기공사 관련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본 공사의 오수공 및 상수공에 필요한 전기 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제어반, 내선전기)는 토목공사 업체에서는 시공할 수 없고 전기분야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별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사업비 0,000천원(부가세 포함)이 과다 계상 되게 하였다.

3. 인·허가서류 작성비용 관련

칠곡군과 ◇◇◇◇◇◇◇◇ ◇◇◇◇◇◇◇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2013.12.27.)」 제4조 기관별 임무에 따르면 칠곡군은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제반 인·허가 사항 이행 및 인·허가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 등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약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추진 중 필요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인허가서류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칠곡군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변경 반영 근거

및 대가 산출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이 설계변경 시 도급금액에 인허가서류 작성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여 사업비 00,000천원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철곡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ㄹ ㄹ ㄹ ㄹ 공원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ㄸ ㄸ ㄸ ㄸ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칠곡군 ㄸ ㄸ ㄸ ㄸ 과에서는 “ㄹ ㄹ ㄹ ㄹ 공원조성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7. 3. 30. ‘※※건설(주) Å Å Å’과 계약하고 2020. 3. 2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 ₩ 공원조성공사	00	00	지상2층 2동 연면적 345㎡	0,000	2017. 3.20.	2017. 3.24. ~ 2020. 3.20.	※※건설(주) À À À	진도 5%

1. 데크 하부 철골공사 적용 관련

공원 내 데크설치 하부 철골공사는 경량철골조립설치가 적정함에도 고가의 잡철물제작설치로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2. 돌놓기 적용 관련

스탠드 및 통석계단 돌놓기는 시공이 용이한 전석쌓기가 적정함에도 고가의 정원석(화강석) 쌓기 및 놓기를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철곡균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ㄲㄲㄲ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칠곡군 ㄲㄲㄲ과에서는 “○○○ ○○○○○○ 공원 조성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7. 3. 15. ‘《《《《《건설(주) √√√’과 계약하고 2018. 3. 16.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						
○○○ ○○○○○○ 공원 조성사업	00	00	공원조성 A=8,000㎡	000	2017. 3. 15.	2017.3.17. ~ 2018.3.16.	《《《《《건설 √ √ √	진도 60%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정산 미이행

본 공사의 순성토 15,211m³는 당초 운반거리 L=6.0km 지점의 임의 위치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중 12,747m³은 운반거리 L=4.8km 위치의 토취장에서 반입하였고, 나머지 2,464m³은 인근의 타 공사현장에서 무대로 반입하는 등 운반거리 및 순성토량이 변경되어 공사비 절감 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 할 우려가 있다.

2. 규사(도막형바닥재)포장 적용 부적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11. 7,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도포장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보도 포장 공법 및 재료에는 블록 계포장, 아스팔트혼합물포장, 수지계혼합물포장, 콘크리트포장, 타일 등 미장제포장 및 기타 포장이 있으며,

규사(도막형바닥재) 포장의 경우 기존 자전거도로나 테마공원, 산책로 등 시인성 향상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을 요구하는 구역에 사용되거나, 기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상단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표현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위 현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규사(도막형바닥재) 포장은 향후 재료분리 등으로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으로 최종 마무리함이 적정한데도 신설 콘크리트 포장 상단에 불필요한 고가의 규사(도막형바닥재, A=410m², T=30mm) 포장을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00,000천원(관급자재)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에서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칠곡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면 하수관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칠곡군 ♂♂♂♂소에서는 “♂♂면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아래 [표] 와 같이 2017. 5. 24. ‘(주)우우우우 ∨∨∨’와 계약하고, 2020. 5. 21.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 면 하수관로 설치 공사	00	00	오수관로 L=29.5Km	00,000	2017. 5.24.	2017. 6. 7. ~ 2020. 5.21.	(주)♀♀♀♀ √ √ √	진도 5%

1.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 구축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기업청고시 제2017-23호)」에 따르면 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칠곡군 ∗ ∗ ∗ ∗ 소에서는 하수관로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중소기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분리 발주함이 타당함에도 본 공사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사업비 00,000천원(부가세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2. 부지임대료 관련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공사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공사에서는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30개월, 1,500㎡)를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0,000천원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칠곡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칠 곡 군
관 계 부 서	↑ ↑ ↑ ↑ 소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칠곡군 ↑ ↑ ↑ ↑ 소에서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17. 5. 26. ‘(주)◇◇건설 ◆◆◆’과 계약하고, 2020. 5. 21.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	◇◇	하수처리장 Q=1,500m ³ /일	0,000	2017. 5. 26.	2017. 6. 7. ~ 2020. 5.21.	(주)◇◇건설 ◆◆◆	진도 5%

1. 관로 터파기 관련

본 공사의 하수처리장 부지 내 하수처리시설 터파기 구간에 설치되는 차집관로(No.119~No.121+2.5, L=42.5m), 방류관로(No.0~No.1+16.5, L=36.5m), 상수관로(No.16+10~No.22+1.48, L=111.48m)는 하수처리시설 터파기 시 관로매설 공사와 병행 시공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관로 매설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가 불필요한데도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SK판넬) 및 토공작업을 중복으로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2. 부지임대료 관련

「설계실무 요령(경상북도)」에 따르면 공사추진을 위한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는 제경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공사에서는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료(30개월, 1,500m²)를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00,000천원이 과다 계상 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철곡군수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